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161(2024.06.05.) (유효기간: 2024.06.10. ~ 2026.06.06.)

「NH직장인월복리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 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NH직장인월복리적금

■ 상품특징 : 급여이체 및 교차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가 우대되는 직장인전용 월복리 적금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계약 내용은</u>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24. 4. 24.)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제외)
상품유형	채움적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비대면 채널 ■ 해지 :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가입금액	■ 초입금 및 매회 입금 1만원이상 원단위(계좌당), 분기당 3백만원 이내(1인당) 단, 계약기간 3/4 경과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적립누계액의 1/2이내임
계약기간	■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 단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본이자율 (연%,세전)

- 채움적금 가입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국고채금리에 연동하여 매일 변경고시) ※ 농협인터넷뱅킹>금융상품몰>농협은행>금리조회>적립식(채움적금)
- ☞ 국고채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bond.or.kr)가 고시하는 전일자 최종호가수익률
- ☞ 작성기준일 현재 기본이자율이며 실제적용이자율은 가입일의 고시이자율에 따름

~24개월이상 3.61 24개월이상 3.25 36개월 3.42 ~36개월이만 3.42 36개월 3.42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61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3.25	36개월	3.42
--	-------------------	------	-------------------	------	------	------

※ 최고 0.80%p

이 적금 가입 월부터 만기 전월말까지 상품우대조건 충족 후 만기해지 시 기본 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이 가산되어 적용

1. 이 적금에 가입한 고객 중 가입기간 동안 1회 이상 농협은행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한 고객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조건내용	우대이자율
① 농협은행 입출식통장으로 3개월 이상 급여이체실적 ^{주1)}	0.30
② 농협은행 NH채움카드(신용/체크)의 결제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주2)}	0.20
③ 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년우대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또는 적립식펀드 중 1개 이상 가입 시 ^{주3)}	0.20

- 2. 인터넷(스마트)뱅킹 또는 올원뱅크로 이 적금에 가입할 경우 0.1%p
- 주1) 급여의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우대이자율 (연%p,세전)

「급여입금 인정기준 주요내용」

- ※ 급여는 농협 급여이체와 타행 급여이체로 구분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 예시) 9월 30일(일) 급여일인 경우 휴일로 10월 1일(월)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 → 9월 급여실정 인정(X) / 10월 급여실적 인정(O)
- 1. 농협 급여이체 : 급여 코드로 입금된 경우(*농협 :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 2. 타행 급여이체 : 통장 기록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보수, 월보수, salary , pay" 등으로 기록된 경우
- 3. 급여이체일 등록 :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1영업일을 포함)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주2) 농축협카드 제외, 현금서비스 제외, 농협은행 입출식통장을 통한 결제실적 주3) 만기일 전월말 기준 유효계좌 보유고객, MMF 제외

우대서비스/우대금리의 기준실적 또는 **납입한도** 산정 시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대금결제 등을 포함한 **자동입출금거래**는 **신청일에 상관없이 실제거래가 발생한 날의 해당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일이 월말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의 사유로 실제거래가 익월에 발생하면 익월실적에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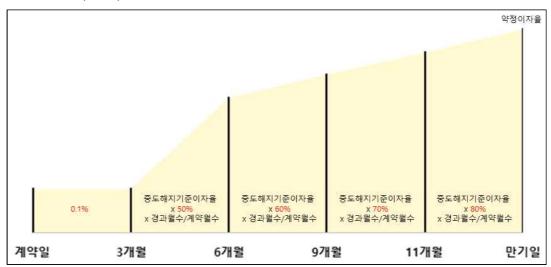
•	채운적금	중도해지(기자율	적용

경과기간	적용금리/적용율
3개월 미만	0.1
6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율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9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율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2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율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2개월 이상	국고채 1년물 금리

중도해지이자율 (연%,세전)

- 중도해지이자율 : 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 넷째자리에서 절사)
- 중도해지 최저이자율은 0.1%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기본이자율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 계산방법(예시)



중도해지이자율 산출근거

> ※ 위 그림은 중도해지기준이자율, 경과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율이 아닙니다.

■ 채움적금 만기후이자율 적용

만기후이자율 (연%, 세전)

만기후 3개월 이내	만기시점 국고채 1년물 금리
만기후 1년 이내	만기시점 채움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의 50%
만기후 1년 초과	만기시점 보통예금 이자율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단, 만기일 이후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는 변동된 만기 후 이자율 적용)



만기이자율 산출근거	■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율을 월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계산식
	: 월입금액×(1+약정이자율/12)×{(1+약정이자율/12)^계약월수-1} / (약정이자율/12)
양도 및	■ 양도불가
담보제공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가능
부분인출	■ 불가
재예치	■ 불가
자동이체	 자동이체 출금계좌가 타행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 신청해야 하며, 타행자동이체는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말일로 자동이체 설정 시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됨에 따라 다음 달 첫 영업일에 입금되어 해당 월 입금이 누락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일 자동이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타행자동이체 등록: 매월 말일 '24. 3. 31.(일) 자동이체 미처리, 4.1.(월) 자동이체 처리 → 이후 자동이체 처리일자 5.31.(금) → 3월 미납된 금액은 소급 적용 불가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3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은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적금은 분기별 납입한도가 있는 상품으로 동일 상품 중복 가입 시 한도가 합산 적용됨에 따라 분기별 납입한도가 초과될 경우 자동이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중복 가입 여부 및 분기별 잔여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개인고객부)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